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166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16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18가합5829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박재성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정욱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R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이은희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18가합58299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R선교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R선교회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Q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N과 피고 주식회사 Q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984,397,8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1)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Q, R선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1,343,562원, 원고 B에게 459,012,603원, 원고 C에게 82,747,397원, 원고 D에게 108,436,164원, 원고 E에게 135,360,822원, 원고 F에게 270,893,151원, 원고 G에게 160,957,808원, 원고 H에게

138,339,726원, 원고 I에게 271,090,411원, 원고 J에게 53,757,808원, 원고 K에게 27,089,315원, 원고 L에게 55,349,0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N에, ① 피고 주식회사 Q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가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7호로 공탁한 6,377,828,360원 및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6호로 공탁한 75,042,300원 중 1,984,397,8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② 피고 R선교회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가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6호로 공탁한 2,302,506,200원 및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5호로 공탁한 98,387,100원 중 1,984,397,8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R선교회

제1심 판결 중 피고 R선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Q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 Q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대하여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Q 패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S, 이하 'M'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P은 M의 대표이사이다.
- 2)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O는 N의 대표이사이고, P은 N의 사내이사이다.
- 3)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R선교회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Q로부터 증여받은 단체이다.
- 4) 원고들은 M에 돈을 대여한 채권자들이다.

나. AB과 피고 Q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 1) N은 2018. 5. 16.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고 하며, 제1, 2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8억 원에 피고 Q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6.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피고 Q과 피고 R선교회는 2018. 5. 16. 피고 Q이 피고 R선교회에 제2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하는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에는 '기부채납협약서는 2018. 5. 16. N과 피고 Q이 맺은 매매계약서와 연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2018. 8. 17.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R선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공탁

- 1) 피고 Q 명의의 제1 부동산과 피고 R선교회 명의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2020. 5. 6.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대전광역시에 수용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19수용1248호).
- 2) 제1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피공탁자를 피고 Q 또는 N으로 하여 2020. 4. 28. 수용보상금 6,377,828,360원을, 2020. 8. 20. 증액된 수용보상금 75,042,300원을 각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2717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6호).

3) 또한 제2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피공탁자를 피고 R선교회로 하여 2020. 5. 6. 수용보상금 2,302,506,200원을, 2020. 8. 21. 증액된 수용보상금 98,387,100원을 각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2716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5호, 이하 대전광역시가 피고 Q 또는 N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과 피고 R선교회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한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N은 2019. 8. 1. 피고 Q을 상대로 피고 Q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955), 위 법원은 2020. 7. 15. '피고 Q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Q은 N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Q이 항소하였는데, N이 2021. 7. 21. 소를 취하하였다.

2) N은 2021. 5. 28. 피고 Q을 상대로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수용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 6,377,828,360원 및 75,042,300원(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7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6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4645), 위 법원은 2023. 6. 1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N에 있음을 이유로, 결국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에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Q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3099 판결).

3) 또한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가 피공탁자를 피고 R선교회로 하여 2020. 5. 6. 수용보상금 2,302,506,200원을, 2020. 8. 21. 증액된 수용보상금 98,387,100원을 각 공탁한 것(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6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5호)과 관련하여, 피고 R선교회는 N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 15호증, 을나 제2, 3, 12, 14, 15, 16호증, 을다 제5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원고들은 M에 돈을 대여하였고, N, O, P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N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원고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N의 유일한 책임재산인데, N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Q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액인 1,984,397,8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청구

(1) 가액배상 주장 대전광역시가 수용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주장 위 (1)항과 같은 가액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피고 Q, R선교회의 가액배상의무는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바, 피고 Q, R선교회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① 제1 부동산의 경우 이를 수용한 대전광역시가 피공탁자를 피고 Q 또는 N으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 6,377,828,360원 및 75,042,300원(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7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6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제2 부동산의 경우 이를 수용한 대전광역시가 피공탁자를 피고 R선교회로 하여 수용보상금 2,302,506,200원과 증액된 수용보상금 98,387,100원을 각 공탁한 것(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2716호,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5475호)과 관련하여, 피고 R선교회는 N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대전광역시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거나 위 수용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N에 귀속시키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이 피고 Q, R선교회에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Q, R선교회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N에 귀속시키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제1 부동산), N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되어(제2 부동산) 이미 N에 복귀되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은 이미 채무자인 N에 복귀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바, ① 제1심 판결의 피고 R선교회 부분 중, 피고 R선교회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R선교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결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R선교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R선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② 제1심 판결의 피고 Q 부분은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들 승소 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Q에 유리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별지